휴직자복무관리지침

제정 2020.06.19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'취업규칙' 제42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의 실효성 있는 복무관리를 통하여 휴직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휴직자 복무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취업규칙, 인사규정, 인사규정시행세칙 등 상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주관부서 : 휴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.
- 2. 운영부서 : 해당 소속 직원의 휴직을 결정 및 관리하는 소속부서를 말한다.
- 3. 휴직의 목적 외 사용 :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취업규칙 제8조 제3호에 해당 하는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4. 심사대상자 : 휴직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.

제 2 장 휴직자 복무 관리 및 실태 점검

제4조(휴직자 의무) ①휴직자는 당초 신청한 휴직을 그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휴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배하여 그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 시 복직명령, 징계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. ③휴직을 신청하는 자는 그 휴직의 목적 사용 준수를 위하여 [별지1]에 의한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휴직자 교육) 주관 및 운영부서장은 휴직자의 휴직 전 대면이나 공문, 안내문 등으로 휴직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, 단, 필요한 경우 교육내용을 이메일 등의 고지로 대체할 수 있다.

- 1. 휴직 제도의 취지
- 2.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
- 3.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
- 4.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
- 5.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
- 6.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사항

제6조(휴직자 복무상황 신고) ①휴직자는 휴직 중 소속에 의거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에게 반기말을 기준으로 복무상황을 [별지2]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반기 사항은 해당년도 7월 2일까지, 하반기 사항은 익년도 1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.

- 1.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신고는 생략할 수 있음
- 2.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신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음
- 3. 병역휴직의 경우에는 복직시에 할 수 있음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[별지1]에 의한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③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, 체류기간, 연락방법, 연락처 등을 [별지3]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휴직 중 소속에 의거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단기(14일 이하)의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 및 돌봄대상자를 동반한 가족돌봄휴직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 휴직 사유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또는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그 서류(학점이수 증명, 재학 증명, 치료증명 등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주관 및 운영부서장은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, 사실을 조회하기 위하여 휴직자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휴직자는 그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휴직 기간 중 사유 소멸 시 신고)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휴직 중 소속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관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에게 신고하고, 인사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복직원을 작성·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복직을 하여야 한다.

- 1. 공상휴직의 경우 조기 완치 진단을 받은 때에는 완치 진단일로부터 7일 이내
- 2. 육아휴직의 경우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영유아 사망 또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일 이내(영유아 사망 시 즉시 신고 후 휴가 처리)
- 3. 질병휴직(신체·정신)의 경우 조기 완치 진단을 받은 때에는 완치 진단일로부터 1일 이내
- 4. 학위취득·유학(연수 포함)·자기개발휴직의 경우 학위를 조기 취득하거나 해당 과정의 조기 수료 시 학위 취득일 또는 해당 과정의 수료일로부터 국내의 경우 1일 이내, 국외의 경우 20일 이내
- 5.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돌봄 대상자의 사망이나 돌봄 사유가 조기 해소된 때에는 사망 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일 이내(대상자 사망 시 즉시 신고 후 휴가 처리)
- 6. 고용휴직(국제기구, 국내외 기관 근무 등)의 경우 해당 사유의 조기 해소 시 해소된 날로부터 국내의 경우 3일 이내, 국외의 경우 20일 이내
- 7. 배우자 동반휴직의 경우 해당 사유가 조기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
- 8. 병역휴직의 경우 조기 제대 시 제대일로부터 7일 이내
- 9. 기타 휴직의 경우 휴직 사유 소멸 시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국내의 경우 1일 이내, 국외의 경우 20일이내
- 10. 위 각호의 경우로서 해당 기간내 복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나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이나 사유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기까지 복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휴직실태 점검) ①주관 및 운영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서를 기준으로 제9조 제3항에 의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
- ②운영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[별지4]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상반기 사항은 7월 10일까지, 하반기 사항은 익년도 1월 10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주관부서장은 운영부서 점검결과를 집계하여 인사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주관 및 운영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휴직자의 복무상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.

제 3 장 휴직검증위원회

제9조(구성 및 운영) ①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본사의 경우 보통인사위원회로, 지사의 경우 지사인사위원회로 대신하고, 본사의 경우 노동 조합 부지부장을, 지사의 경우 지회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.

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회는 휴직실태 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- 1.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
- 2.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
- 3. 고의성 여부
- 4.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
- 5.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⑥휴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제 4 장 휴직 위배사항 조치 및 최종 조치

제10조(휴직 위배사항 조치) 주관 및 운영부서장은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휴직의 목적 사용에 위배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소관 휴직검증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 제11조(최종 조치) 휴직 결정권자는 휴직검증위원회 심사 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,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지침에 의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및 휴직실태 점검은 2020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한다.

서 약 서

본인은 년 월 일자로 휴직함에 있어서 아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휴직자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목적에 맞게 휴직을 사용하겠습니다.
- 2. 본인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, 휴직 기간 중 사유 소멸 시 신고 등 휴직자로서의 이행의무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.
- 3.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 :

직급 :

성명: (서명)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

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

소속	(처・실・지사)			(부·팀)			
직급							
성명(생년월일)	(년 월 일)						
휴직종류	질병휴직/ 육아휴직/ 가사돌봄휴직 등						
휴직기간	~ (년 월)						
휴직실적	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, 횟수 등을 기제						
보수 수령 여부	보수(봉급,수당) 수령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						
	해외 체류 사실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						
해외 체류 여부		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					
	해당시	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	② 체류기간	개월			
			③ 체류목적				
	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(□가능, □불가능)						
	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						
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	(해당시) □ 1월 미만, □ 1월 이상~3월 미만, □ 3월 이상~6월 미만, □ 6월 이상~1년 미만, □ 1년 이상)						
	③ 고의성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						
	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(□허용, □불허용)						
	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						
휴직자의 복무 상황	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						
	※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						
	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						
		년 월	일				
	휴직기	자 성명	(서명)				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							

[※]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

【별지3】

휴직자 국외 출국 신고서

소속	(처·실·지사) (부·팀)					
직급						
성명						
휴직 종류	<i>질병휴직/ 육아휴직/ 가사돌봄휴직 등</i>					
방문 국가	미국 ※ 다수국일 경우 모두 기재하며, 세부 방문 도시도 기재					
체류 기간	2020.03.23 ~ 2020.04.05 (2주간)					
연락방법 및 연락처	로밍예정 / 010 - *** - ****					
	년 월 일					
	휴직자 성명 (서명)					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						

【별지4】

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

□ 지사명 :

□ 자체점검 개요

○ 점검기간 : *상반기 '00.6.30() ~ '00.7.4(), <5일간*>

하반기 '00.12.30() ~ '00.1.4(), <5일간>

○ 점검부서 :

○ 점검내용 : *휴직전 사전교육 여부,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, 휴직의 충실성*

여부 등 휴직 전반

※ 첨부 :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

□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(해당 시 작성, 작성 예시)

구분	적발 인원	휴직 종류	적발 시점	적발사례	조치결과	비고
지사 -	0명	육 <i>아</i> <i>휴직</i>	<i>휴식</i> 종료 후	• 휴직 대상 자녀는 국 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	•휴직검증위원회 개최 - 복직결정 •본사 복직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	
	0명	유학 휴직	<i>휴직</i> 종료 후	• 휴직사유 종료(학기 미등록) 후 신고없이 0개월간 해외에서 체 류 중	•휴직검증위원회 개최 - 복직결정 •본사 징계의결 요구	
	0명	육 <i>아</i> 휴직	휴식 중	•휴직 중 영리업무금 지 의무 위반(개인사 업종사)	•휴직검증위원회 개최 - 복직결정 •본사 징계의결 요구	
	0명	<i>가족</i> 돌봄 휴직	<i>휴직</i> 종료 후	• 모친 가족돌봅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	•휴직검증위원회 개최 - 복직결정 •본사 정계의결 요구	

□ 기타 건의사항 등

*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